

의안번호	제 280 호
의결년월일	1995. 5. 27 (제 33 회)

의 결 사 항	원안 가결
------------------	----------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지	고 성 군 수
제 출 연 월 일	1995. 5. 10.

고성군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증정조례(안)

의안 번호	280
----------	-----

제출연월일 : 1995. 5. 10.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조례증 맞지 않은 문맥을 수정 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중 문맥이 맞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를 삭제(안 제3조 제1항 제1호).
-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중 불필요한 문맥인 "예산의 범위안에"를 삭제하므로서 조문을 바로 잡음(안 제7조)

고성군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중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7조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p>제3조 (운영방향)㉠(생략)</p> <p>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u>지방자치단체의</u>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p> <p>2.~5. (생략)</p> <p>제7조 (수당등) 실무위원회의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u>예산의</u> <u>범위안에</u>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 (운영방향)㉠(현행과 같음)</p> <p>1. (삭 제)</p> <p>2.~5. (현행과 같음)</p> <p>제7조 (수당등) (삭 제)</p>